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12613(2015.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2015.10.15.)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공포안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함

2) 성북구청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함(안 제2조)

○성북구 삼선동5가 411번지 →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411)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없음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한송희** 총무담당 **이주남**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행정국장 10/20
손정수

협조자 법제담당 **박기훈**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시행 행정지원과-30878 () 접수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eongbuk.go.kr>
전화 02-2241-4304 / 전송 02-2241-6577 / songhie@sb.go.kr / 대시민공개